

BNK K200지수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[펀드코드 : CS332]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[매우 높은 위험] | | | | | | 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1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
| 1 | 2 | 3 | 4 | 5 | 6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,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으로 주로 국내주식,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며,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(陽)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므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위험 등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투자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매우 높은 위험 | 높은 위험 | 다소 높은 위험 | 보통 위험 | 낮은 위험 | 매우 낮은 위험 | |

이 요약정보는 **BNK K200지수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**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·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**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[요약정보]

|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,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일간단위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양(陽)의 2배 내외가 되도록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·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(陽)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이를 위해 KOSPI200지수, 현물바스켓(Basket), 레버리지펀드 및 레버리지ETF,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의 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현물 포트폴리오(주식, 레버리지펀드 및 레버리지ETF)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노출수준을 매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배 내외 수준이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. · 비교지수 : KOSPI200지수의 일간수익률*200% - (91일물 CD금리 수익률 ÷ 365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-|--|--|--|--|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| 분류 | 투자신탁, 증권(주식파생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(추가납입가능), 종류형, 고난도금융투자상품 ※ 이 투자신탁은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,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는 숙려기간,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개인 일반투자자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적용되며, 청약철회권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투자비용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 <th colspan="4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(단위 : %)</th> <th colspan="5">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(단위 : 천원)</th> </tr> <tr> <th>판매 수수료</th> <th>총보수</th> <th>판매보수</th> <th>동종유형 총보수</th> <th>총보수·비용</th> <th>1년</th> <th>2년</th> <th>3년</th> <th>5년</th> <th>10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</td> <td>납입금액의 1.0% 이내</td> <td>1.000</td> <td>0.500</td> <td>0.960</td> <td>1.0320</td> <td>204</td> <td>313</td> <td>425</td> <td>662</td> <td>1,343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</td> <td>없음</td> <td>1.500</td> <td>1.000</td> <td>1.350</td> <td>1.5318</td> <td>157</td> <td>319</td> <td>487</td> <td>841</td> <td>1,836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e)</td> <td>납입금액의 0.5% 이내</td> <td>0.750</td> <td>0.250</td> <td>0.620</td> <td>0.7817</td> <td>130</td> <td>212</td> <td>299</td> <td>482</td> <td>1,012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</td> <td>없음</td> <td>1.000</td> <td>0.500</td> <td>1.020</td> <td>1.0320</td> <td>106</td> <td>216</td> <td>330</td> <td>572</td> <td>1,26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| | | | | 클래스 종류 |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(단위 : %) | | | | 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(단위 : 천원) | | | | | 판매 수수료 | 총보수 | 판매보수 | 동종유형 총보수 | 총보수·비용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 10년 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 | 납입금액의 1.0% 이내 | 1.000 | 0.500 | 0.960 | 1.0320 | 204 | 313 | 425 | 662 | 1,343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| 없음 | 1.500 | 1.000 | 1.350 | 1.5318 | 157 | 319 | 487 | 841 | 1,836 | 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e) | 납입금액의 0.5% 이내 | 0.750 | 0.250 | 0.620 | 0.7817 | 130 | 212 | 299 | 482 | 1,012 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| 없음 | 1.000 | 0.500 | 1.020 | 1.0320 | 106 | 216 | 330 | 572 | 1,267 |
| | 클래스 종류 |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(단위 : %) | | | | 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(단위 : 천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판매 수수료 | 총보수 | 판매보수 | 동종유형 총보수 | 총보수·비용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 10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 | 납입금액의 1.0% 이내 | 1.000 | 0.500 | 0.960 | 1.0320 | 204 | 313 | 425 | 662 | 1,34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| 없음 | 1.500 | 1.000 | 1.350 | 1.5318 | 157 | 319 | 487 | 841 | 1,836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e) | 납입금액의 0.5% 이내 | 0.750 | 0.250 | 0.620 | 0.7817 | 130 | 212 | 299 | 482 | 1,01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e) | 없음 | 1.000 | 0.500 | 1.020 | 1.0320 | 106 | 216 | 330 | 572 | 1,267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(주1) '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'는 투자자가 1,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출하게 되는 총비용(판매수수료+총보수비용)을 의미 합니다.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,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로 가정하였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(주2)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,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되는 경과 시점 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(주3)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(주4) '동종유형 총보수'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 수익률) | 종류 | 최초설정일 | 최근 1년 | 최근 2년 | 최근 3년 | 최근 5년 | 설정일 이후 |
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| | 24.07.02 ~ 25.07.01 | 23.07.02 ~ 25.07.01 | 22.07.02 ~ 25.07.01 | 20.07.02 ~ 25.07.01 | |
| 판매수수료 미징구형(C)(%) | | 2019-07-01 | 9.43 | 16.02 | 17.22 | 12.86 | 9.51 |
| 비교지수(%) | | 2019-07-01 | 7.76 | 14.22 | 14.82 | 10.34 | 7.32 |
| 수익률 변동성(%) | | 2019-07-01 | 40.19 | 36.44 | 34.87 | 35.67 | 39.62 |

(주1) 비교지수: KOSPI200지수의 일간수익률*200% - (91일물 CD금리 수익률 ÷ 365) (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)
 (주2)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.
 (주3)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,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| 성명 | 생년 | 직위 | 운용현황 | |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(국내주식파생형)(%) | | | | 운용 경력년수 (공사모 포함) |
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| 집합투자 기구 수 | 운용 규모 | 운용역 | | 운용사 | | |
| | | | | | 최근1년 | 최근2년 | 최근1년 | 최근2년 | |
| 강세진 | 1979 | 책임 (수석매니저) | 3개 | 682억 | 11.56 | - | 11.56 | 14.87 | 13년 8개월 |
| 오준완 | 1970 | 부책임 (상무대우) | 7개 | 1,003억 | 11.56 | 14.87 | 11.56 | 14.87 | 22년 3개월 |

[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: 강세진 - 0개, 0억 / 오준완 - 0개, 0억]
 (주1) '책임운용전문인력'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, '부책임운용전문인력'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 (주2)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(주3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.
 (주4) '운용경력년수'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.

투자자 유의사항

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,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또한,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-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| 구분 |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|--|
| 투자원본 손실위험 |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|
|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|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또한,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,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| 주식가격 |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자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|
| | 변동위험 |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| |
| | 파생상품 투자위험 |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(레버리지 효과)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| |
| | 레버리지 투자위험 |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순자산보다 더 큰 주식투자비중을 유지하는 투자신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성고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이 보이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지수의 성과조차 추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완성하므로 파생상품의 내재 변동성 및 민감도에 따라 다른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기대수익과 변동성 등의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재무적인 사전지식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사전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다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| |
| | 레버리지 복리 효과에 의한 위험 |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를 매일 추구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기간, 시장평균성과, 변동성 등에 따라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2배 내외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상승할 경우에도 2배 내외, 하락할 경우에도 2배 내외를 추구하는 것에서 초래되는 결과입니다. | |
| | 레버리지 불가능 위험 |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 구성 주식, KOSPI200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, KOSPI200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현금성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레버리지 전략을 달성할 예정입니다. 다만, 급격한 시장 변동, 자금시장의 유동성 악화 및 기타 레버리지 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목적 달성이 못할 수 있습니다. | |
| |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|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"BNK배당증권투자신탁 1호(주식)"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|
| 매입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4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· 14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| | |
| 환매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4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· 14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| | |
| 환매수수료 | 없음 | | |
| 기준가격 | 산정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당일 기준가격=(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-부채총액)/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·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| |
| | 공시장소 | 판매회사 본·영업점, 집합투자업자(www.bnkasset.co.kr)·판매회사·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(dis.kofia.or.kr)에 게시합니다. | |
| 과세 | 구분 | 과세의 주요내용 | |
| | 집합투자기구 |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. | |
| | 수익자 |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단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 | |
| |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|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등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등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
| 퇴직연금제도 의세제 |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| | |
| 전환절차 및 방법 | 해당사항 없음 | | |
| 집합투자업자 | BNK자산운용(주) (대표번호 : 02-6910-1100 / 인터넷 홈페이지 : www.bnkasset.co.kr) | | |
| 모집기간 |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| 모집·매출 총액 | 10조좌 |

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효력발생일 | 2025년 07월 10일 | 존속기간 |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|
| 판매회사 | 집합투자업자(www.bnkasset.co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| | |
| 참조 |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,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 |
|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|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-판매경로-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,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 | | |
| | 종류(Class) | |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|
| | 판매 수수료 | 수수료 선취(A) |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,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| 수수료 후취 |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| 수수료 미징구(C) |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(A), 판매수수료후취형(B)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,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판매 경로 | 온라인(e) |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|
| | | 오프라인 | 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|
| | | 온라인슈퍼 (S) |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|
| | 기타 | 펀드, 전문투자자 및 기관(F) |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,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,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법인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|
| | | Wrap전용(W) | Wrap Account용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아예)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[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]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증권신고서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 ● 투자설명서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, 집합투자업자(www.bnkasset.co.kr)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● 정기보고서(영업보고서, 결산서류)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● 자산운용보고서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www.bnkasset.co.kr) ● 수시공시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www.bnkasset.co.kr) | | | |